



#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

청소년관련 정책수립과 주요사업 추진시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·캠페인등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위원회를 구성, 운영하여 청소년의 잠재역량개발 및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

## I 근거

-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확대) 제3항
 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서울시 「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·운영협조요청」 (2015. 1. 13)
- 2014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

## II 개요

- 구성인원 : 15~30명 내외
- 모집대상 : 9세~24세의 관내 초·중·고·대학생 또는 거주자
- 모집방법 :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병행
- 구성비율

계	초등학생	중학생	고등학생	대학생	비고
100%	10%내외	30%내외	30%내외	30%내외	비학생은 연령에 따라 중·고·대학생에 포함선발

※ 서울시외 12개구에서 위원회 운영중

- 운영 :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흥은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

### Ⅲ

### 세부추진사항

#### □ 선 발

##### ○ 기본방향

- 지역 편중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으로 선발·구성하여 대표성 확보
-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기회균등 및 소수자참여보장
- 성별비율은 어느 한쪽 성이 60%를 넘지 않도록 함

##### ○ 선발절차

모집방법 및 선발기준마련	○ 선발인원, 추천자, 모집방법 등 확정
2015. 1. 28한	
↓	
모집공고 및 추천의뢰	○ 모집공고(청소년수련시설및단체, 관내학교 서부지방교육청 등) ○ 추천의뢰(시설운영위원회, 소수청소년관련단체 등)
2015. 1. 29~ 2015. 2. 13	
↓	
선발(심사)위원회구성	○ 참여기구 활동 청소년, 지역청소년단체 실무자 청소년분야전문가, 담당공무원 등 3~6인
2015. 2. 13한	
↓	
선발(서류심사 및 면접)	○ 서류심사 : 활동경력 및 활동계획 검토 ○ 면 접 : 참여활동의지, 적극성, 관심도 등을 평가(서식참조)
2015. 2. 16~2015. 2. 27	

##### ○ 서류 및 면접심사기준 : 별 첨

##### ○ 선발기준

- 1차심사(서류) : 선발인원의 2배수 선발
- 2차심사(면접) : 최종선발

○ 선발시 고려사항

- 청소년 단체의 회장, 학급임원 등 자치기구 대표 청소년은 비록 우수하더라도 중복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활동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선발시 검토
- 고3학생은 학업 수행상 적극적 참여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제외
- 추천은 단수 추천할 경우 활동의지와 관계없이 선발하여야 하므로 복수추천을 받아 선발
- 근로, 북한이탈, 한부모가정, 다문화, 장애, 비학생 등 소수청소년을 포함시켜 대표성 확보

□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

- 일 자 : 2015. 3월중
- 장 소 : 3층 대회의실
- 참석대상 : 신규위원 및 청소년단체 관계자
- 행사내용 : 위촉장수여, 위원자기소개, 구청장 인사말씀, 정기회의개최

**IV**

**위원회 운영**

□ 임 기 : 위촉일로부터 1년

(연임은 1회 가능하며, 연임자는 전체위원의 1~2명에 한함)

□ 임 원 :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(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)

□ 회의종류

- 정기회의 : 연 4회(분기별 1회)
- 수시회의 : 회의개최가 필요한 경우

□ 활동사항

- 청소년정책수립에 대한 의견제시
- 청소년주요행사 및 캠페인 참여
- 청소년 참여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
-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□ 기 타

- 활동시간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정
- 참여실적이 우수한 위원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수여

□ 위촉 및 해촉

○ 위 촉

- 선발된 위원에 대해서는 구청장명의로 위촉장 교부

○ 해 촉

- 활동이 불성실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
- 해촉기준

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자
2.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%미만인자
3. 범죄, 위원회 명의로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
4.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“특별한 사유”란 다음 각호와 같다

1. 천재지변
2.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
3. 본인 질병과 사고
4.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(2촌이내)의 결혼 및 상을당한 경우
5.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## V

### 소요예산

- 금 액 : 2,800천원
- 구 성 : 국비 1,400천원, 시비 1,400천원
- 사 용 : 프로그램운영, 간담회비 등
- ※ 국·시비 지원금은 「홍은청소년문화의집」에 배정

## VI

### 행정사항

- 어르신청소년과 :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제정
- 홍보담당관 : 지원자모집 및 위촉식 언론홍보
- 복지정책과 : 활동시간에대한 자원봉사시간 인정협조
- 홍은청소년문화의집 : 청소년참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서 제출